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1. 18 선고 2016가단147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12. 14.

판결 선고 2017. 1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대 717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1, 12, 13, 16, 17, 18, 19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ㄹ' 부분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 주택 111m², 같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나무기둥천막 및 함석지붕창고 14m², 같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ㅂ' 부분 나무기둥천막 및 함석지붕창고 21m²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, 5, 8, 9, 10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, ㄹ, ㄴ, ㅂ' 부분 합계 365m²의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C 대 717㎡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주택 등을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, 위 주택 등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, 제194조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항성욱

별지